

도시 기반 시설 본부 도시철도국
2018년 3·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

2018. 11. 27.(화)

도시 기반 시설 본부
(도시철도국)

2018년 3/4분기 예비비 지출보고

□ 관련근거

- 서울특별시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
 -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예비비 집행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| 사업명 | 집행액 | 집행내역 | 집행사유 |
|--|-------|---|--|
| 동북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손해배상 청구의 소 판결금 지급 | 2,691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출일 : '18.09.07. ○ 지급대상 : 경남기업(주) 외 7명 ○ 지출사유 : 판결금 지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심 판결(서울시 일부승소)에 따른 판결금 지급의무에는 연15%의 고율 이자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○ 재정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를 활용하여 판결금 지급 |
| 서울지하철 9호선2단계 915공구 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소 판결금 지급 | 1,82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출일 : '18.10.26. ○ 지급대상 : 경남기업(주) 대원건설산업(주) ○ 지출사유 : 판결금 지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심 판결(원고(경남기업) 일부승소)에 따른 판결금 지급의무에는 연15%의 고율 이자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○ 재정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를 활용하여 판결금 지급 |

- 붙임 : 1. 동북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개요 1부.
 2. 지하철 9호선2단계 915공구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 개요 1부. 끝

동북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개요

사업개요

- 위 치 : 왕십리역~미아사거리~중계동 은행사거리~상계역
- 규 모 : 연장 13.4km, 정거장 16개소, 차량기지 1개소
- 사업기간 : '19년 ~ '24년
- 사업방식 : 민간투자사업(BTO)
- 사 업 비 : 1조 4,361억원

소송개요

- 사 건 :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80475
(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)
- 당 사 자 : 원고 경남기업 주식회사 외 7명 (법무법인 해냄)
피고 서울특별시 (정부법무공단)
- 원고소가 : 10,071,307,861원
- 사건개요
 - 동북선 우선협상대상자 경남기업 컨소시엄은 '15. 4월 경남기업의 기업 회생절차 개시 후, '15.12월에 사업수행능력 미충족, 자금조달계획 불확실, 향후 사업추진 불투명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됨
 - 이에 경남기업 등은 '16. 9월 사업 준비비용 및 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

추진경위

- '15.04. : 주간사(경남기업)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(서울중앙지법)
- '15.04.~10. : 사업 정상화 방안 검토
- '15.11. : 동북선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수립
- '15.12. : 우선협상대상자(주간사 경남기업) 지정 취소 처분 추진
※ 처분사유 : 사업수행능력 미 충족, 자금조달계획 불확실, 향후 사업추진 불투명

- '16.09. : 소장접수(서울행정법원) ※ 서울시 송달일 : '16.10.4
- '16.10. : 행정소송 응소방침(법률지원담당관) 및 소송대리인 지정
- '16.12. : 행정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
- '17.05.~'18.07. : 총 10회 변론 진행
- '18.08. : 1심 판결선고(서울시 일부승소)
- '18.09. : 판결금 지급(2,691,594천원), 항소장 제출

소송결과

| 구 분 | 1 심 | 2 심 |
|-------|---|-----|
| 선고결과 | 서울시 일부승소 | 진행중 |
| 선 고 일 | '18. 8. 29 | |
| 판결요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처분을 취소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(승소) ○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해지시 지급금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컨소시엄이 지출한 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음(승소) ○ 이 사건 제안공고에서 제안비용보상금의 지급대상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탈락한 이 사건 컨소시엄에 이 사건 제안공고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제안비용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(일부승소) | |

판결금 지급현황

(단위 : 원)

| 구 분 | 계 | 원 금 | 이 자 | 비 고 |
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
| 판결금 | 2,691,593,824 | 2,670,740,100 | 20,853,724 | |

향후계획

- 법률지원담당관과 협조하여, 제안비용 보상 대상에 대한 대응논리를 검토하여 2심 소송에 적극 대응

9호선 2단계 915공구 건설공사 소송개요

□ 공사개요

- 위 치 :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사거리(안주역)~삼성동 힐스테이트APT(선정릉역)
- 사업기간 : '08.06 ~ '14.12
- 총 연 장 : 1.77km(본선 1.44km, 개착 0.33km)
- 계약금액 : 97,973백만원
- 계약업체 : 경남기업(주) 90%+대원건설산업(주) 10%

□ 사건개요

- 사건번호 :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 590578(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소)
- 당 사 자 : 원고 경남기업(주) 외 1, 피고 서울특별시 외 1
- 원고소가 : 6,554백만원
- 사건개요
 - 원고가 '15. 4월 기업회생절차 개시 후, '15. 6월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서울시가 채권(하자보수보증금, 지체상금)을 확보하기 위해 915공구 및 916공구 공사대금 6,554백만원을 상계 처리
 - 이에 대해 '17. 12.29 원고는 서울시가 미지급한 공사대금(6,554백만원)에 대해 지급을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함.

□ 추진경위

- '08. 5.30 : 도급계약 체결
- '08. 6.~ '14.11 : 1차 ~ 8차 공사 시행
- '14. 6.30 : 9차 공사 착공

- '15. 1. ~ : 9차 공사 지체상금 부과
 - 9차공사가 준공기한('14.12.31) 까지 미완료 되어 지체상금 부과
- '15. 3.27 : 경남기업 기업회생절차 신청(서울중앙지방법원)
- '15. 3.28 : 9호선 2단계 개통
- '15. 4. 7 : 경남기업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(서울중앙지방법원)
- '15. 5.27 : 도급계약 해지 통보(경남기업→도기본)
- '15.12.17 : 타절준공검사 완료
 - 하자보수보증금 : 2,796백만원, 지체상금 : 1,250백만원, 보완공사비 : 2,508백만원 확보
 - * 915공구 공사대금(3,567백만원) 및 916공구 공사대금(2,987백만원)과 상계 처리
- '15.12.29 : 계약보증금(1,872백만원) 청구 (도기본→건설공제조합)
- '17.12.29 : 소장 접수
- '18. 2.27 : 응소방침 수립(법률지원담당관) 및 소송대리인 지정
(소송대리인 : 법무법인 넥서스 박승진 변호사)
- '18. 4. ~ '18. 8. : 총 3회 변론 진행
- '18.10.12 : 1심 판결 선고(원고(경남기업) 일부승소)
- '18.10.26 : 1심 판결금 가지급(5,307백만원)
 - 잔여 예치금 3,487백만원 + 예비비 1,820백만원

소송결과

| 구 분 | 1 심 (2017가합590578) | 2 심 |
|-------|--|-----|
| 선고결과 | 원고 일부승소 | 진행중 |
| 선 고 일 | '18.10.12 | |
| 판결요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시가 직접 시행한 보완공사비는 하자보수비에 해당되며, 하자담보책임기간(1~2년)이 종료된 부분을 제외한 잔여 하자보수보증금에서 보완공사비가 지출되어야 함. ○ 또한, 계약보증금의 보증범위에는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체상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,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하자보수비 및 지체상금의 경우 계약보증금에서 처리 되어야 함 | |
| 판 결 금 | 5,307백만원 ('18.10.26 가지급) | |

가지급금 지출 현황

○ 가지급금 지출 : 잔여 예치금 + 예비비

- 총지급액 : 5,307백만원 (원금+이자)
- 재원부담 : 잔여 예치금 + 예비비

※잔여 예치금

- 서울시가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체상금 명목으로 경남기업 공사대금(915,916공구)에서 확보하여 보관중인 금액의 '18.10월 기준 잔액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판 결 금 | | | 부담재원 | | |
|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
| | 원 금 | 이 자 | 계 | 잔여 예치금 | 예 비 비 | 합 계 |
| 경 남 기 업 | 4,377 | 750 | 5,127 | 3,487 | 1,820 | 5,307 |
| 대 원 건 설 업 | 154 | 26 | 180 | | | |
| 계 | 4,531 | 776 | 5,307 | 3,487 | 1,820 | 5,307 |

※ 지급사유 : 원심판결에는 연15%의 고율이자 발생에 대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활용하여 판결금 지급

향후계획

- 법률지원담당관과 협조하여 2심 소송에 적극 대응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작성 자 | 도시철도계획부장 : 김진팔 ☎ 772-7020 | 계획과장 : 최병훈 ☎ 7021 | 담당:박현우 ☎ 7131 |
| | 도시철도토목부장 : 정대현 ☎ 772-7040 | 토목3과장 : 호경수 ☎ 7043 | 담당:장대성 ☎ 7237 |